[도표]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



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

(출처 :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, 대법원규칙 제2779호, 2018. 3. 7. 일부개정, 2018. 4. 1. 시행)

소송목적의 값	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
2,000만원까지 부분	10%
2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	
[20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x $\frac{8}{100}$]	8%
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	20.4
[4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x $\frac{6}{100}$]	6%
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	40.4
[7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 x $\frac{4}{100}$]	4%
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	
[9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5천만원) x $\frac{2}{100}$]	2%
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	
[1,0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원) x <u>1</u> 100]	1%
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	0.707
[1,340만원+ (소송목적의 값 - 5억원) x $\frac{0.5}{100}$]	0.5%

^{*}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.